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4
----------	-----

2019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의일자 : 2019년 5월 22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 라. 상정결과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 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과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12세이하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향후 감면 혜택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2.6%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 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옥)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12세 이하)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까지 확대·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
1. <u>12세 이하인 자</u>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1. <u>18세 이하인 자</u> ,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1. -----
가. <u>12세 이하인자</u> ,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가. <u>18세 이하인 자</u> , ----- ----- ----- -----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5. -----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가. -----
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나.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다. -----
라. 65세 이상의 노인, <u>12세 이하의 어린이</u>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라. 65세 이상의 노인, <u>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u> , -----
마.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마. -----

○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인 바,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18세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18.7월)에 따르면,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26%)은 OECD 평균(25.6%) 수준보다 높으며, 고도비만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09년 1.1% → '13년 1.5% → '17년 2.0%)임.

조례개정 시 세입감소 금액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수에 대한 통계가 없어 서울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료를 활용하여 금액을 추계하여도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50% 감액할 경우 연간 173만 7천 원, 전용사용료 30% 감면시 연간 12만6천원으로 연간 총

186만원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입장권 등을 30~50% 감면하고 있음.

〈타 시도 사용료 감면 현황〉

연번	시도명	조례명	관련 조항
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2. 사용료 등의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나. 노인, <u>어린이</u> , <u>청소년</u>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입장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200원 2. <u>어린이</u> · <u>청소년</u> ·군인 100원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마. <u>어린이</u> : 100분의 50 바. <u>학생</u> 및 노인 : 100분의 30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용료 감면) ②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3. <u>청소년</u> , <u>어린이</u>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54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2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상훈, 홍성룡, 이정인, 송도호,
김호평,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송아량 의원 (9명)

1.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과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12세이하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향후 감면 혜택 또한 감소할것으로 예상됨.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2.6%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 이에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9조(입장료) ③ 제1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한다.
- 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의 가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제5항의 라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입장료) ③ 제1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의 가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제5항의 라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p> <p>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p>	<p>제9조(입장료) ③ (현행과 같음)</p> <p>1. 18세 이하인 자</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u>제7조제1항</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별표 2</u>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p> <p>가. 12세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1.(현행과 같음)</p> <p>가. 18세 이하인 자</p>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
분의 30 감액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 65세 이상의 노인, 12세 이
하의 어린이,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마.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5항의 가, 나, 다항 (현행과 같음)
라.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
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 시설 이용 시 ‘12세 이하인 자’ 까지 적용되는 입장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감면혜택을 ‘18세 이하인 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

나. 추계결과 ≙ 9,314,390원 비용(수입감소) 발생

- 예상되는 비용(수입감소)이 5년동안 9,314,390원으로 연평균 1,862,878원임

- 비용추계 전제

- 1)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수 등 세부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서울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률 및 1인당 체육시설 사용료를 활용하여 비용추계

※ 체육시설 이용률 = 체육시설 이용자수 / 서울시 전체 등록인구(9,857,426명, '17년 말 기준)

※ 1인 당 체육시설 사용료 =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총계 / 이용자 수

- 2) 18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는 연1회,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가정

- 3) 입장료 및 사용료는 2018년도 금액으로 동결한다고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단위 : 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1,862,878	1,862,878	1,862,878	1,862,878	1,862,878	9,314,390
	1) 입장료 감소	957,010	957,010	957,010	957,010	957,010	4,785,050
	2) 개인연습사용료 감소	779,868	779,868	779,868	779,868	779,868	3,899,340
	3) 전용사용료 감소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세출	소계(b)	-	-	-	-	-	-
□ 총 비용(b-a)		1,862,878	1,862,878	1,862,878	1,862,878	1,862,878	9,314,390

1) 시설관람 입장료 연간 감면액 : 957,010원

○ 추정식 : [연평균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수(567,177명) x 연평균 시설관람이용률(0.3%)] x 1인당 연평균 시설관람 입장료(1,125원)¹⁾ x 감면율(50%) = 957,010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관람 입장료	시설관람 입장자수	서울시민의 시설관람이용률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수
2015	48,440,328원	41,901명	0.4%	601,701명
2016	28,640,550원	26,061명	0.3%	565,872명
2017	14,354,500원	13,288명	0.1%	533,778명
연평균	30,478,459원	27,083명	0.3%	567,117명

주1) 1인당 연평균 시설관람 입장료(1,125원) = 시설관람 입장료(30,478,459원) ÷ 시설관람 입장자수(27,083명)

2) 연간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액 : 779,868원

○ 추정식 : [연평균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수(567,177명) x 연평균 개인연습이용률(0.2%)] x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사용료(1,375원)²⁾ x 감면율(50%) = 779,868원

구 분	개인연습 사용료	개인연습 이용자수	서울시민의 개인연습 이용률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 수
2015	26,957,350원	20,181명	0.2%	601,701명
2016	29,855,010원	21,583명	0.2%	565,872명
2017	27,733,920원	19,704명	0.2%	533,778명
연평균	28,182,093원	20,489명	0.2%	567,117명

주2) 1인당 연평균 개인연습 사용료(1,375원) = 개인연습사용료(28,182,093원) ÷ 개인연습 이용자수(20,489명)

3) 18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시 전용사용료 감면액 : 126,000원

○ 추정식 : 잠실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420,000원) × 감면율(30%) ×
연간 행사횟수(1회) = 126,00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